2000년대의 자산관리 전략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독립 6년 후인 1971년, 리콴유(Lee Kuan Yew)는 싱가포르가 유럽에서 스위스가 차지하는 위상을 동남아시아에서 차지하고자 한다고, 즉 '자금 및 금 시장'이 되고자 한다고 선언했습니다.[1] 30년 동안 이 포부는 주로 아시아달러시장, 외환시장, 그리고 다국적 은행의 역내 자금관리 업무를 통해 추구되었으며, 이는 제C편에서 서술합니다. 개인 자산도 존재했지만, 아직 이를 겨냥한 의도적인 정책은 없었습니다. 이는 세기의 전환기에 바뀌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와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이 도시를 세계적인 자산관리 중심지로 만들고자 나섰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행정부를 갖춘 작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했습니다. 세금 면제, 공공자금의 민간 운용사 위탁, 교육기관 설립, 신탁법 현대화, 신탁회사에 대한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 그리고 2001년에 새로 쓰인 법정 은행비밀 규정이 그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 전략을 살펴봅니다. 먼저 자산관리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삼기로 한 결정과, 이를 실행에 옮긴 조치들을 다룹니다. 이어서 2001년에 확정된 형태의 은행법(Banking Act) 은행비밀 조항, 2004년의 신탁법 개혁, 그리고 2005년 신탁회사법(Trust Companies Act)을 분석합니다. 네 번째 절에서는 스위스, 유럽, 아시아의 프라이빗 뱅크가 싱가포르에 진출하여 성장한 과정을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추적하며, 2010년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프라이빗 뱅크의 설립도 다룹니다. 이 장은 자문가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과 싱가포르와 제네바의 비교로 끝맺습니다. 이후 외국 조세 목적상 비밀주의가 투명성으로 전환된 과정은 제E편에 속하며, 여기서는 상호 참조로만 다룹니다.

이 장은 제네바 편에 직접 대응하는 장을 두고 있습니다. *Genève, place financière internationale*는 스위스 은행비밀이 1934년 연방은행법(Federal Banking Act)에 의해 형법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된 과정과, 2008년부터 2018년 사이에 외국 조세당국에 대해 그 효력 대부분을 잃게 된 과정을 추적합니다.[2] 싱가포르는 바로 그 스위스 모델이 공격을 받기 시작한 시점에 개인 자산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살펴보는 10년은 원형이 해체되는 동안 신생 금융중심지가 부분적으로 스위스를 본뜬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이 흐름은 싱가포르가 빠르게 부상한 이유와, 이후 그만큼 빠르게 적응해야 했던 이유를 함께 설명해 줍니다.

핵심 요약

1998년부터 싱가포르 정부는 이 도시를 세계적인 자산운용 및 자산관리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그 출발점은 공공자금의 민간 운용사 위탁이었고, 이어서 세금 면제, 2003년 자산관리연구원(Wealth Management Institute) 설립, 그리고 2008년 2월 15일 이후 사망에 대한 상속세 폐지가 뒤따랐습니다. MAS 조사 기준으로 싱가포르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1998년 말 1,506억 싱가포르달러에서 2007년 말 1조 1,730억 싱가포르달러로 증가했습니다. 2001년에 재제정된 은행법 Section 47은 이 법과 그 별표 3(Third Schedule)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며, 개인에 대해서는 최고 12만 5,0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 또는 3년의 징역에 처합니다. 2004년 수탁자(개정)법(Trustees (Amendment) Act 2004)은 2004년 12월 15일부터 신탁법을 현대화했습니다. 여기에는 100년의 고정 영구구속 금지 기간과 외국 유류분 규정에 대한 보호가 포함됩니다. 2005년 신탁회사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임의 등록제를 MAS의 의무적 라이선스 제도로 대체했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습니다. 스위스, 유럽, 아시아의 프라이빗 뱅크는 이 10년 내내 싱가포르에서 확장했으며, 2008년 이후 스위스 은행비밀에 대한 압박은 자산과 은행가의 아시아 이동을 가속화했습니다.

주

1. Owen Walker 및 Chan Ho-him, “Switzerland’s wealth managers bank on a future in Asia”, *Financial Times*, SWI swissinfo.ch 재게재, 2024년 10월 16일: 리콴유는 1967년 취리히를 방문했으며 1971년 “Singapore sets out to be to south-east Asia what Switzerland is to Europe – a money and gold market”라고 말함. ↩
2. Ressos, *Genève, place financière internationale*, partie D, chapitre IV(loi fédérale sur les banques du 8 novembre 1934 et son article 47) 및 partie E, chapitre III(la fin du secret bancaire à l’égard des autorités fiscales étrangères, 2008–2018).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